JIPYONG NEWSLETTER
법무법인 지평 | 글로벌 비즈니스 뉴스레터
JIPYONG
2017년 3월 제22호

▌최신 해외정보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사업자 등록증(TDP) 재등록 제도 간소화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2017년 2월 22일, 사업자 등록에 관한 개정 규정(Ministry of Trade regulation No. 8/M-DAG/PER/2/2017)을 발효하였습니다. 개정 전 구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증(TDP)의 유효 기간은 5년이며,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에 재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증(TDP) 기간 만료 이전에 사업자 등록 사무소(이하 'KPP')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KPP는 신고를 수령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갱신된 사업자 등록증(TDP)을 발급하여야 하며, 만일 KPP에서 3 영업일 내 갱신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 등록증(TDP)의 기간이 만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유효하고 자동적으로 재등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기존 구 규정에 따라 재등록 절차에 부과되던 행정 비용 등도 면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